

제재내용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KB라이프생명보험(주)

2. 제재조치일 : 2026. 7. 22.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관	■ 기관주의, 과징금 1,546백만원, 과태료 526.4백만원
임원	■ 견책, 주의,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주의상당)
직원	■ 주의, 자율처리 필요사항 통보 ■ 과태료 2.9백만원

4. 제재대상사실

가. 보험계약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위반(기존보험계약의 부당소멸)

□ KB라이프생명보험(주)(이하 '회사')는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 기존보험계약이 청약철회되었거나 유지중인 경우 비교안내 대상에 포함되지 않도록 전산시스템을 운영하여,

소속 보험설계사가 새로운 보험계약 청약시 청약철회되었거나 유지중인 기존보험계약이 누락된 '비교안내 확인서'를 보험계약자에게 제공함으로써,

2019.12.3.~2021.6.30. 기간 중 '△△의xx 무배당 KBOO' 등 846건의 보험계약(수입보험료 약 7,781백만원)을 체결하면서 보험계약자 735명에 대해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주요 보장 내용 등 중요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고 기존보험계약 748건을 부당하게 소멸하게 한 사실이 있음

나.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금 부지급)

- 회사는 2020.4.8.~2024.4.3. 기간 중 총 38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금 지급을 누락하는 등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 144백만원을 과소지급한 사실이 있음

다.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보험료 납입면제 업무 부적정)

- 회사는 2020.4.3.~2023.11.24. 기간 중 총 19건의 보험계약에 대해 보험약관에 기재된 사항과 다르게 보험료 납입면제 처리를 누락하여 보험료 총 57백만원을 과다수령한 사실이 있음

라. 기초서류 기재사항 준수의무 위반(간편심사보험 부당 인수)

- 보험회사는 사업방법서 등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고
회사의 「△△△△종신보험XX무배당(해약환급금과소지급형)」 등 7종 간편심사보험의 사업방법서에 따르면 간편심사보험 청약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표준체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한 경우, 동일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음을 안내하여야 함에도,
 - 회사는 2020.12.11.~2023.10.26. 기간 중 총 30건의 간편심사보험에 대해 간편심사보험 청약일로부터 직전 3개월 이내에 표준체로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였음에도, 위 사업방법서와 다르게 일반심사보험에 청약할 수 있음을 안내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음

마. 보험계약 체결단계의 설명의무 위반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시부터 보험금 지급시까지의 주요 과정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여야 하고, 보험계약 체결단계에서는 보험계약의 청약시 보험약관을 교부받고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을 설명받아야 한다는 사실 및 동 사항이 이행되지 않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의 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일명 '해피콜' 제도)해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9.12.24.~2024.4.16. 기간 중 「○○의XX 무배당 OOOO종신 △△」 등 21건(수입보험료 56백만원)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 계약 체결단계에서 정한 중요사항을 보험계약자에게 설명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바. 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및 기초서류 관리기준 준수의무 등 위반

- 보험회사는 보험요율을 산출할 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통계자료를 기초로 대수(大數)의 법칙 및 통계신뢰도를 바탕으로 하여 약관상 보장하는 위험과 위험률, 산출통계 등이 일치하도록 위험률을 산출 하여야 하고,

기초서류의 적정성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법, 작성 오류에 대한 통제 및 수정 방법 등을 포함한 기초서류관리기준을 정하고 이를 지켜야 하는데도,

- 회사는 2019.4.1.~2024.10.31. 판매한 상품에 적용되는 입원적용률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보험수익자가 청구한 보험금액 중 일부를 합의 등에 의한 방식으로 감액하여 지급하였음에도 청구된 일수 전체로, 보험금 지연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환급건을 보험사고 발생에 따른 보험금 지급건으로 경험통계에 각각 반영한 결과,

6종의 보험요율이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어 보험계약자에게 보험료를 과다하게 수취하였고, 기초서류의 적정성 및 오류에 대한 확인·검증 등 기초서류관리기준에서 정한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실제보다 높게 산출된 위험률을 그대로 적용한 보험 상품 등을 개발·판매한 사실이 있음

-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내용이 정당한지 여부를 검증·확인하여야 하고 보험회사가 기초서류 관리기준을 지키는지 점검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사나 검증 없이 보험계리업무를 수행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 회사가 위와 같이 보험요율을 실제보다 높게 산출되도록 한 행위에 대하여 선임계리사는 기초서류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충분한 확인·검증 없이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의 산출이 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선임계리사 검증의견서'를 발급하는 등 보험요율 검증·확인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사.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이해상충방지체계 구축의무 위반

-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 담당자와 집합투자업자로서의 업무 담당자 간 회의나 통신을 한 경우 내부통제기준이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그 회의 또는 통신에 관한 사항을 기록·유지하고 준법감시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어야 함에도,
 - 회사는 2019.10.26.~2024.11.1. 기간 동안 「보험업법」에 따른 업무부서(상품개발부서)와 집합투자업 업무부서(변액운용부서) 담당자 간의 회의·통신기록을 유지하지 않았으며, 준법감시인의 확인 절차를 마련하는 등 이해상충방지체계를 갖추지 않은 사실이 있음

아.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제한 위반 등

- 금융투자업자는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금융투자업자가 정한 적절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확인하여야 하는데도,
 - 회사는 검사대상기간 중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 월별)로 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명세를 징구하여 확인하지 아니하였으며, 관련하여 적절한 기준 및 절차도 마련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금융투자업자의 임직원은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경우 매매명세를 분기별(투자운용인력의 경우에는 월별)로 소속 회사에 통지해야 하는데도,

- ○○○ 매니저는 2023.4.19.~2024.6.25. 기간 동안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여 자기의 계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을 9회 매매하고, 월별*로 매매명세를 소속 회사에 통지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음

* ○○○ 매니저는 2023.2.8.부터 회사의 투자운용인력으로 등록